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일부발췌

제11장 이용자

제105조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단, 꼭 필요한 경우 등급외자도 받을 수 있다.)

- ②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랑구 및 광진구 거주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 ③ 자립보행이 가능하거나 조금의 부축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동 불편한 대상자
- ④ 전염성 질환이 없으며, 원만한 공동생활이 가능한 대상자
- ⑤ 기타 담당 사회복지사 사정(assessment)을 통해 입소판정 승인을 받은 대상자

제106조 (이용제외 대상) ① 전염성 질환이 있는 노인

- ②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타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노인
- ③ 거동이 불가능한 자
- ④ 매일 의료적인 처치(혈압측정, 혈당측정, 약물복용 제외)가 필요한 노인
- ⑤ 본인이 입소를 강력히 거부하는 대상자
- ⑥ 본 시설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대상자
- ⑦ 담당 사회복지사의 판단 하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제107조 (모집방법) 입소자 및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을 통한 모집
- ② 시설 홈페이지(www.truem.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홍보 등을 통한 모집
- ③ 전단지 제작 및 배포, 홍보물 비치 및 게시 등을 통한 모집
- ④ 관계기관 연계 협력 등 기타 적절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 ⑤ 모집시 기관 및 급여종류, 이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린다.

제108조 (입소순위) ① 노인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 치매 및 뇌졸중 진단을 받은 자
- ③ 저소득층 대상 중 치매 및 뇌졸중 진단을 받은 자
- ④ 일반 치매 및 뇌졸중 진단을 받은 자

제109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21명으로 한다.(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정원의 10%까지 초과할 수 있다.)

제110조 (이용계약의 목적) ① 시설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할,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내 등급이 인정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112조 (구비서류) ① 이용신청서 1부(시설 비치)

②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⑦ 서약서 1부

⑧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부

⑨ 처방전 1부(해당자 한함)

⑩ 욕창, 낙상예방 및 송영지침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 1부(시설 비치)

⑪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시설 비치)

제113조 (이용절차) ① 전화상담과 내방상담을 통한 이용노인의 상태 사정

②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2주간 적응기간을 거친 후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이용적정여부(지나친 문제행동, 프로그램방해, 공포분위기조성 등)를 종합하여 적응기간이 끝나는 날에 보호자에게 입소여부를 통보한다.

③ 결과 통보 후 이용대상 및 보호자의 수용에 따라 정식등록을 할 수 있다.

제114조 (이용가능시간) ① 주6일 실시한다(월~토요일).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운영하지 않는다.

② 평일 이용시간은 07:30 ~ 22:00이며, 토요일은 08:00 ~ 17:00이다.

③ 단 시설 사정상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제115조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1.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별지2]¹)와 같다.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별지2]와 같다.

3. 월15일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 평일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른 연도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기준으로 월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8시간 이상 10시간미만 한도)

4. 야간가산, 공휴일 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계산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감대상자는 중위소득에 따라 9% 또는 6%로 감액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비급여 : 식재료비 1식 4,000원, 간식비 1일 1,000원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수납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산이용료를 매달 15일까지 시설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116조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제외자는 서울특별시 지침 등의 시설 운영 지원계획에 따른다.

②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 및 간담회를 통한 협의를 거친 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비용의 부담의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범주에 포함되어 별도로 비용수납은 하지 않는다.

2. 다만 수급자 혹은 가족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

3. 수급자 혹은 가족의 요구나 급여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건강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경우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제117조 (서비스내용) 재가급여, 주·야간보호서비스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 및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아래 9항에 의한다.

1. 사례관리사업(이용상담, 인지/신체기능검사, 일상생활수행능력훈련, 사례회의 등)

2. 건강관리 및 기능회복사업(건강체크, 투약관리, 건강검진, 건강체조, 운동치료 등)

3. 사회심리재활사업(신바람웃음체조, 실버치매예방체조,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클레이아트, 음악활동, 웃음활동, 인지프로그램, 감상프로그램 등)

4. 특별행사사업(생신잔치, 어버이날행사, 야외체험, 야외나들이, 설맞이행사, 한가위행사, 송년행사 등)
5. 복리후생사업(위생관리, 차제공, 중식·간식제공, 석식제공, 송영서비스, 신변처리서비스, 양치·세면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
6. 가족지원사업(가족상담, 가정통신문, 가족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7. 운영지원사업(홍보활동, 직원교육, 강사활동관리, 자원봉사활동관리, 직원회의 등)
8. 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116조에 의하여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단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8조 (송영서비스) ① 오전, 오후, 야간 송영서비스를 실시한다.

- ② 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각 대상자의 이송 승하차 지점에서 이용한다.
- ③ 송영 시 안전을 위해 정원을 준수하여 인원을 탑승한다.
- ④ 반드시 보조 탑승자가 동승함으로써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⑤ 응급상황 또는 보호자 부재 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 ⑥ 그 외에 관하여는 시설의 급여제공 지침 중 송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9조 (계약해지) 이용의 종결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타 이용자에게 해가 되는 자.
- ② 타 이용자에게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프로그램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이용자가 의료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⑤ 이용노인의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⑥ 이용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기관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과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 조정 가능.
- ⑦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취소된 자.
- ⑧ 본 시설에서 관리하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
- ⑨ 기타 담당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⑩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제120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① 제1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용종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결한다.
- ② 종결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족이나 본인이 종결을 원할 시에는 수시로 종결할 수 있다.
 - 나. 가족이나 본인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으로 종결이 된다.
 - 다. 이용노인이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 ③ 종결자가 다시 등록할 시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

제121조 (사후지도) 종결자가 의뢰시설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비밀보장의 권리와 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제122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이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및 생명, 신체,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질병, 연령, 성별 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간호 및 요양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최선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언제든지 장기요양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⑥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 등 참여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⑦ 이용자는 요양의 방법 및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고 알 권리를 가진다.
- ⑧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모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⑨ 이용자는 개인기록을 열람하거나 기타 개인적 자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⑩ 이용자는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3조 (이용자 및 가족의 책임) 시설 이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서약서에 의거 그 가족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제1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이용자의 보호자)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신원인수인(이용자의 보호자)은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신원인수인(이용자의 보호자)은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및 의견 개진의 권리가 있다.
- ⑤ 신원인수인(이용자의 보호자)은 본 시설의 운영규정 각 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여 지켜야 하며, 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 ⑥ 신원인수인(이용자의 보호자)은 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여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관심을 고취시키도록 하며, 가족기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예시: 가족송년모임 참여 등)
- ⑦ 응급사태 발생 시 신원인수인(이용자의 보호자)은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⑧ 시설 이용 시 이용자의 지병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서약서에 따라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용자의 보호자)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신원인수인(이용자의 보호자)은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5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용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 ② 간호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③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이용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갖추어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제126조 (시설물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제16장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한다.
-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27조 (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연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② 종사자는 연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③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28조 (퇴소) 이용자는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퇴소하며, 다음의 사항이 있을 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① 직원을 모욕하거나 직원 또는 다른 거주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용자
- ② 직원에게 성희롱 및 이용자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자
- ③ 이용자를 선동하여 시설의 평화를 파괴하고 시설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
- ④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일삼는 자
- ⑤ 이용자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⑥ 이용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인지장애의 문제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설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 ⑦ 이외 제119조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이용자

제12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 ① 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시설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 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시설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